

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

귀 기울이는 금천구의회

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
2024. 11. 26(화) 10:00

제252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심사안건

검 토 보 고 서

서울특별시 금천구 체육진흥 지원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(문화환경국 문화체육과 소관)



복지건설위원회

전문위원 추병수

서울특별시 금천구 체육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제안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제2618호
- 나. 제 출 자 : 금천구청장
- 다. 제출일자 : 2024. 11. 13.
- 라. 회부일자 : 2024. 11. 13.

2. 제안이유

「국민체육진흥법」 개정(2024. 3. 26. 공포 및 2024. 9. 27. 시행)에 따라 금천구체육회와 금천구장애인체육회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, 사용 수익하게 하거나 수익계약으로 관리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금천구 체육진흥을 도모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금천구체육회와 금천구장애인체육회에 공유재산을 무상 대부, 사용·수익 및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(안 제14조부터 제17조 신설)
- 나. 준용 조례 명칭 정비(안 제18조)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33조의3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없음

5. 검토의견

가. 개정 이유

「국민체육진흥법」 개정에 따라 금천구체육회와 금천구장애인체육회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, 사용 수익하게 하거나 수익계약으로 관리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임.

나. 주요 내용

1) 금천구체육회와 금천구장애인체육회에 공유재산을 무상 대부, 사용·수익 및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(안 제14조부터 제17조 신설)

- 공유재산의 무상 사용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대부·사용허가 기간을 5년으로 하는 내용을 명시함
- 체육회는 운영비 대부분을 지방자치단체에 의존하고 있으며, 공유재산 무상 대부 등의 법적 근거가 없어 사무공간의 안정적인 확보 등 기반이 부족한 실정임.

향후 사무공간 등 물적 기반을 확보함으로써, 지역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타당하다 판단됨

2) 준용 조례 명칭 정비(안 제18조)

-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보조금 관리 조례」를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로 함.

다. 검토의견

- 본 개정안은 「국민체육진흥법」 개정에 따라 체육회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 및 위탁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의 범위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관계법령

국민체육진흥법

[시행 2024. 9. 27.] [법률 제20413호, 2024. 3. 26., 일부개정]

제33조의3(공유재산의 대부 등)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에도 불구하고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, 사용·수익하게 하거나 수의계약으로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부·사용·수익의 내용·조건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

[본조신설 2024. 3. 26.]